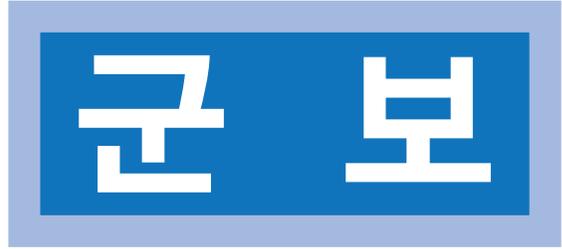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504호 2023. 3. 2.(목)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3-214호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장수군 공고 제2023-243호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7
장수군 공고 제2023-244호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2

공 고

장수군 공고 제2023-205호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열람 공고 31
-------------------	---

회 람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공고 제2023-214호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보편적 복지의 소외계층인 청소년에 대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등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 제3조 ~ 제4조)
- 다. 신청주체, 발급신청 및 포인트 지급 방법 (안 제5조 ~ 제7조)
- 라. 카드의 사용처,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중지 및 환수(안 제8조 ~ 제10조)

- 마.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 지도·감독, 매출금의 지급(안 제11조~ 제14조)
- 바.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 2023. 2. 23. ~ 2023. 3. 14.

라.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 063-350-2102, 팩스 : 063-350-5703)

마.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담당자 (전화 063-350-2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청소년이 교육·문화·체육·진로체험·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 기간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사용자에게 매년 20만원 이내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발급신청 등)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① 군수는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게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연2회 나누어 지급한다.

제8조(카드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수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가맹점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포인트를 생성한 당해연도까지로 하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매출금의 지급) 군수는 카드 포인트 매출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 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재)발급 위임장

지원대상자 (청소년)	성명 :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x x x x x x x
수임자	성명 :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x x x x x x x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x x x x x x x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1. 가맹점 정보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x x x x x x x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2. 계좌정보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3. 카드단말기 정보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	-----------------	--

※ 매장 내 카드단말기 VAN사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것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

[별지 제4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장수 - 호)

1. 가맹점 정보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x x x x x x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2.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변경사유 :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

[별지 제5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장수 - 호)

1. 가맹점 정보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x x x x x x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2. 해지사유

--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반납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	------------

[별지 제6호서식]

장수 - 호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 소 개 지 :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 . ()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관 련 법 령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3-243호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장수군 읍·면민의날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
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 장수군 읍·면 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읍·면민의 날 행사 범위 (안 제2조)

-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등으로 규정함

다.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3조~제4조)

- 1) 읍·면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2)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함

라. 읍·면민의 날 행사비 지원 (안 제5조)

- 1)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마. 준용(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350-2139, 팩스 : 063-350-5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담당자(☎063-350-21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읍·면민의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읍·면 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등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로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사회단체 협의회·위원장
2.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읍·면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2.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읍·면민의 날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읍·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 관련 단체
2.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
3.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제5조(행사비 지원) 장수군수는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행사비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3-244호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 장수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장수군 홍보대사 활동(안 제2조)
 - 장수군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 규정
- 홍보대사 위촉 및 위촉해제(안 제3조 ~ 제4조)
 -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과 위촉해제 등의 규정
- 장수군 홍보대사 예우(안 제7조)
 - 홍보대사에게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공 할 수 있는 규정

○ 홍보대사 활동 저작권 귀속 등(안 제8조)

- 홍보대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 장수군 귀속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066(063-350-5702)

3) 전자우편(이메일) : kim3mi@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홍보팀(063-350-2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장수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제2조 각 호의 활동 중 특정 역할만을 부여해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등)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홍보대사 운영 및 제반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한다.
2.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관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관리 등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기

획조정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을 비치한다.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견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군에 귀속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홍보대사 제 호

위 축 장

성 명 :

주 소 :

귀하를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2년)]

년 월 일

장수군수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

○주관부서 및 담당 00000 / 000

주소 및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별	남 / 여
성 명		생년월일	
위 축 기 간		연 락 처	
주요 경력 및 이력			
홍보대사 선정 사유			
일자별 활동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주 소	직 업	연락처	위촉기간	위촉사유	담당	위 촉 해 제 일 및 해제사유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장수군 공고 제2023-205호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열람 공고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등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1일

장 수 군 수

1. 사업목적 : 장수군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순환 복합관광 실현 및 관광객의 통행 불편 해소와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자원 활성화 및 교통안전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구역의 명칭 :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 사업의 위치 :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침곡리 일원
 - 사업 면 적 : A=49,332㎡ (도로개설 L=1,370m, B=8.0m)
 - 사업 시행자 : 장수군수
3. 열람(의견제출) 기간 : 공보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보 등
5. 열람(의견제출) 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
6.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063-350-25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가. 편입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	리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총 계			111필지		233,876.3	49,332.0					
1	계남	침곡	937-2	창	25,148	508	장수군				
2	계남	침곡	942	전	5,285	1,688	장수군				
3	계남	침곡	942-3	전	1,535	1,082	장수군				
4	계남	침곡	944-1	답	331	34	장수군				
5	계남	침곡	955	답	1,247	1,139	장수군				
6	계남	침곡	959-4	전	4,430	2,111	양*수				
							양*조				
							양*희				
7	계남	침곡	959-19	임	830	249	남*양씨 경*공파				
8	계남	침곡	959-20	임	145	145	남*양씨 경*공파				
9	계남	침곡	959-21	임	248	248	남*양씨 경*공파				
10	계남	침곡	959-22	임	3,448	927	남*양씨 경*공파				
11	계남	침곡	1454-3	대	99	26	장수군				
12	계남	침곡	1455-2	구	68	5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계남	침곡	1535-5	구	21	15	장수군				
14	계남	침곡	1536-4	창	110	67	장수군				
15	계남	침곡	1536-5	구	26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계남	화양	7-1	임	13,892	315	양*두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	리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17	계남	화양	7-4	임	18,510	1,458	양*수 (6,170/18,510)				
							양*균 (6,170/18,510)				
							양*수 (6,170/18,510)				
18	계남	화양	7-5	임	248	89	양*사				
19	계남	화양	7-6	임	10	10	양*홍 (지분의3분의1)				
							양*균 (지분의3분의1)				
							양*철 (지분의3분의1)				
20	계남	화양	7-7	전	4,074	1,876	양*수 (1,358/4,074)				
							양*균 (1,358/4,074)				
							양*수 (1,358/4,074)				
21	계남	화양	7-8	전	394	394	양*수 (지분의3분의1)				
							양*균 (지분의3분의1)				
							양*수 (지분의3분의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면	리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22	계남	화양	7-9	입	304	163	양*수 (지분의3분의1)				
							양*균 (지분의3분의1)				
							양*수 (지분의3분의1)				
23	계남	화양	7-10	도	1,127	1,018	장수균				
24	계남	화양	7-11	도	367	367	장수균				
25	계남	화양	7-12	도	287	287	장수균				
26	계남	화양	7-17	전	554	263	성*운				
27	계남	화양	7-18	전	158	70	성*운				
28	계남	화양	7-19	전	133	70	양*수 (지분의3분의1)				
							양*균 (지분의3분의1)				
							양*수 (지분의3분의1)				
29	계남	화양	8	전	820	611	이*기				
30	계남	화양	9	전	357	357	문*형 (지분27분의3)				
							최*규 (지분3분의1)				
							최*혁 (지분27분의2)				
							최*슬 (지분27분의2)				
							최*웅 (지분27분의2)				
							최*식 (지분6분의1)				
최*돌 (지분6분의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면	리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31	계남	화양	10-1	전	1,269	780	이*석 (423/1,269)				
							이*석 (423/1,269)				
							이*석 (423/1,269)				
32	계남	화양	10-2	전	66	66	이*석(22/66)				
							이*석(22/66)				
							이*석 (22/66)				
33	계남	화양	10-3	전	526	526	이*석 (지분3분의1)				
							이*석 (지분3분의1)				
							이*석 (지분3분의1)				
34	계남	화양	11-1	답	2,803	463	정*생 (지분6분의1)				
							전라북도 (지분6분의5)				
35	계남	화양	12-1	답	628	341	신*엽				
36	계남	화양	13-19	답	63	29	김*석				
37	계남	화양	50	천	526	8	이*연				
38	계남	화양	51	전	683	568	한*진 (422/1,266)				
							유*호 (844/1,266)				
39	계남	화양	51-1	전	583	224	한*진 (지분3분의1)				
							유*호 (지분3분의2)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	리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40	계남	화양	52	전	681	364	김*님				
41	계남	화양	53	전	688	614	양*철				
42	계남	화양	55	전	1,950	1,055	성*운				
43	계남	화양	56	전	2,530	460	김*태				
44	계남	화양	56-1	도	300	300	장수군				
45	계남	화양	58-1	전	614	5	양*근				
46	계남	화양	58-3	도	209	71	장수군				
47	계남	화양	225-1	임	17,298	1,661.6	장수군				
48	계남	화양	225-2	임	9,527	417	박*석				
49	계남	화양	225-5	전	345	256	장수군				
50	계남	화양	225-6	전	179	45	장수군				
51	계남	화양	225-9	전	132	95	배*중				
52	계남	화양	225-31	전	850	113	배*중				
53	계남	화양	230-3	도	56	18	장수군				
54	계남	화양	231-15	도	307	232	장수군				
55	계남	화양	231-32	전	1,134	140	최*식				
56	계남	화양	231-54	전	2,789	1,261	최*식				
57	계남	화양	231-55	임	5,755	1,416	최*식				
58	계남	화양	303	답	2,719	574	박*운				
59	계남	화양	305	답	2,298	402	장*준				
60	계남	화양	359	임	2,374	482	국(산림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면	리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61	계남	화양	360	전	793	257	김*수				
62	계남	화양	360-1	도	63	14	최*호				
63	계남	화양	375-1	도	20	6	장수군				
64	계남	화양	376	전	740	398	정*진				
65	계남	화양	377	답	192	115	정*진				
66	계남	화양	377-1	도	73	73	장수군				
67	계남	화양	380	답	1,398	458	배*두				
68	계남	화양	381	답	1,031	492	배*두				
69	계남	화양	382	전	60	60	배*중				
70	계남	화양	383	답	106	106	박*운				
71	계남	화양	384	임	6,238	2,227	한*금 (지분3분의1)				
							한*수 (지분3분의1)				
							한*석 (지분3분의1)				
72	계남	화양	1009	구	536	148	국 (환경부)				
73	계남	화양	1010	구	967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74	계남	화양	1011	도	123	58	국 (국토교통부)				
75	계남	화양	1012-6	구	83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계남	화양	1012-8	구	299	151	국 (농림축산식품부)				
77	계남	화양	1012-10	구	3,638	320	국 (농림축산식품부)				
78	계남	화양	1015-14	구	641	153	국 (농림축산식품부)				
79	계남	화양	1015-15	구	763	763	국 (농림축산식품부)				
80	계남	화양	1015-16	구	295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	리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81	계남	화양	1016	도	992	661	국 (국토교통부)				
82	계남	화양	1031	도	2,585	249	국 (국토교통부)				
83	계남	화양	1066-1	천	1,027	165	전라북도				
84	계남	화양	1067-1	천	343	343	전라북도				
85	계남	화양	1068-1	천	367	367	전라북도				
86	계남	화양	1103	구	3,378	350	국 (농림축산식품부)				
87	계남	화양	1409	답	3,549	569	이*휘				
88	계남	화양	1412	답	3,019	492	이*휘				
89	계남	화양	1413	답	2,517	313	이*창				
90	계남	화양	1414	답	2,219	369	배*중				
91	계남	화양	1415	답	2,173	358	성*이				
92	계남	화양	1416	답	1,993	305	송*순				
93	계남	화양	1417	답	2,208	594	고*석				
94	계남	화양	1418	답	1,441	513	이*선				
95	계남	화양	1419	답	1,086	390	성*운				
96	계남	화양	1420	답	2,293	653	성*운				
97	계남	화양	1421	답	1,758	229	배*중				
98	계남	화양	1422-1	답	429	45	배*중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	리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99	계남	화양	1423	답	1,716	612	배*중				
100	계남	화양	1424	답	2,408	481	성*이				
101	계남	화양	1425	답	2,316	182	성*이				
102	계남	화양	1426	답	1,049	18	김*수				
103	계남	화양	1460	도	2,252	3	국 (농림축산식품부)				
104	계남	화양	1462	도	12,400	1,08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5	계남	화양	1466	구	4,740	898	국 (농림축산식품부)				
106	계남	화양	1467	구	2,939	1,6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	계남	화양	1470	구	2,905	15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8	계남	화양	1558	답	2,291.1	161	양*희				
							양*조				
							양*조				
							양*자				
							양*창				
109	계남	화양	1558-1	답	727.4	727.4	장수군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	리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110	계남	화양	1559-1	답	1,316.7	914	성*순(1/5)				
							성*자(1/5)				
							성*정(1/5)				
							성*현(1/5)				
							성*이(1/5)				
111	계남	화양	1560-1	답	1,292.1	860	성*순(1/5)				
							성*자(1/5)				
							성*정(1/5)				
							성*현(1/5)				
							성*이(1/5)				

나. 지장물건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성 명	주 소
1	계남면 화양리	10-1	분묘	단장	1 기	이*석 외 2명	
			분묘	단장	1 기		
2	계남면 화양리	51	분묘	단장	1 기	한*진 외 1명	
3	계남면 화양리	55	분묘	단장	2 기	성*운	
			비석	비석	1 EA		
			수목	호두나무	8 주		
4	계남면 화양리	56	수목	묘목	100 주	김*태	
5	계남면 화양리	225-1	분묘	단장	2 기	장수군	-
			묘지목	향나무	5 기		
			묘지목	무궁화	1 기		
			묘지목	감나무	1 기		
			묘지목	철쭉	10 기		
			분묘	단장	4 기		
6	계남면 화양리	384	분묘	단장	1 기	한*수 외 2명	
7	계남면 화양리	1015-15	분묘	단장	1 기	농림축산 식품부	-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